

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3일
치과기공소	명칭	
	소재지	연락처 (전화) (팩스)
개설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전자우편	
	면허 종류	면허번호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(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 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치과기공소 시설·장비 개요서	수수료 : 조례로 정함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.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 검토	→	현장 확인	→	기안·결재	→	개설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)